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56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박수현 · 조인철 · 양부남
이개호 · 박용갑 · 서삼석
임오경 · 한정애 · 김영배
김준혁 · 윤종오 · 이정문
조계원 의원(13인)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풍수해, 산불, 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빈번해지고 화재, 낙서 등의 인위적 재난까지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협하는 훼손 요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하고 대형화 추세에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을 포함하는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있던 재난안전관리 관련 조문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만 옮겨져 자연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여기에 현행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된 재난안전관리 정책과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대응·복구를 위한 안전조치 및 조사 등에 대한 규정도 누락되어 있음.

이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조문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등을 포함하고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을 담은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법률 체계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각종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국가유산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난안전관리시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

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유산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유산 안전점검, 재난대응매뉴얼 마련, 재난방지시설 설치,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아.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 재난 피해 상황에 대한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자.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상시적 예방관리 사업인 국가유산돌봄사업의 대상, 범위 등과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차.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홍보 실시,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유산 방재의 날,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카.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재난안전 또는 안전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비용지원,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를 위반하거나 금연구역
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0조).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국가유산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무형유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3.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5.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

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시적·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국가유산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반 조성

제5조(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의 수립·시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3.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의

활용

4.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5. 국가유산 재난대응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6.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점검·평가
7.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8. 그 밖에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도별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관리 현황
2.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인력 현황
3. 국가유산 재난 발생 위험도
4.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유산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결과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유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가유산청

장은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가 수집·제공 및 이용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그 수집·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국가유산 안전관리 추진)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국가유산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인력기준 또는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유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제12조(국가유산 안전점검) ①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는 국가유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난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재난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재난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의 범위 및 재난대응매뉴얼의 정기적 점검·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난방지시설 설치 등) ①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제1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난대응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에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의 관람 등 활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재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과 국가유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보수·보강 또는 위험 요소의 제거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재난 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재난 피해를 입은 지정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피해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복구비용의 지원 등을 위해 재난 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장 국가유산돌봄사업

제18조(국가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사업(이하 “국가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유산
2. 등록문화유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5.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가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국가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3. 국가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난 예방
4. 국가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국가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제19조에 따른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와 제20조에 따른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를 설립한다.

1. 국가유산돌봄사업 관리의 지원
2.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4.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운영

6.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도지사는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가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국가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국가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

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가유산 안전문화 진흥

제23조(교육훈련·홍보 실시)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유산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국가유산 방재의 날) ① 국가유산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

존하고 국민의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국가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 국가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제27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또는 안전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0조(과태료)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돌봄센터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7까지, 제85조, 제88조제6호, 제10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